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31
----------	-------

발의연월일 : 2026. 1. 2.

발 의 자 : 박지혜 · 장철민 · 이용우
임미애 · 김태선 · 김영환
윤준병 · 위성곤 · 박 정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 ·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 그 결과 냉 · 난방 등 기본적 에너지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에너지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주택, 저효율 난방설비, 고비용 연료 의존 등이 결합된 에너지 빈곤 문제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제도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성과 지속성이 부족하고, 단기적 현물지원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에너지효율 개선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설치를 통해 에너지취약계층의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원체제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도록 관련 법 · 정책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별도의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에 관한 법률안」으로 체계화함에 따라, 현행 「에너지법」에 규정된 에너지복지 및 에너지이용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중복·혼선을 해소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8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을 “평가원의 임직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2항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u><삭 제></u>
8. ~ 10. (생략)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8. ~ 10. (현행과 같음) <u><삭 제></u>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
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
의 향상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
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
우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
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
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
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
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
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
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
· 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
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삭 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에너지공급자,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에너지 공급 현황

2. 에너지 이용 현황

3.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 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①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

<삭 제>

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제시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② 에너지이용권을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용자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

<삭 제>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삭 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7(과징금처분) ① 기 후에
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6제
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
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
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
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
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
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
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
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
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삭 제>

한다.

제21조(질문 및 조사)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에너
지공급자, 에너지복지 사업의
대상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
사하게 할 수 있다.

1. 에너지복지 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사
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2조(청문) 기후에너지 환경부장
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에 해당하
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
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 환

<삭 제>

<삭 제>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평가원의 임직원
2. 전담기관의 임직원(제16조의 5제1항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에 한정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평가원의 임직원은-----

-----.

<삭 제>

<삭 제>

<삭 제>

<u>자(해당 에너지이용권을 발급 받은 이용자는 제외한다)</u> 제26조(과태료) ① <u>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에너지공급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② (생략) ③ <u>제1항 및 제2항에</u>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26조(과태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2항에</u>----- ----- ----- -----.
--	---